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3호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418호(2001.12.15.)로 도시계획[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08호(2004.12.10.)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2023. 3.29, 수정가결)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2020-1560호(2020.10.22.),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2023-1726호(2023. 8. 3.)의 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지

- 2004년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 이후 도시 여건 변화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상 매천지구중심 확대와 양재시민의숲역 일대 증가 중인 R&D 시설 수요 등에 대응하여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R&D 생태계 조성하고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3,067,090.0	-	3,067,090.0	2001.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418호)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067,090.0	-	3,067,090.0	100.0	
주거지역	소 계	1,544,901.9	-	1,544,901.9	50.4	
	제1종일반주거지역	226,595.1	-	226,595.1	7.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98,105.0	-	698,105.0	22.8	
	제2종일반주거지역	179,434.7	-	179,434.7	5.9	
	제3종일반주거지역	352,071.2	-	352,071.2	11.5	
	준주거지역	88,695.0	-	88,695.0	2.9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15,338.7	-	415,338.7	13.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06,850.3	-	1,106,850.3	36.1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가) 도로 총괄표

구 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274	93,392 (61,931)	34	44,420 (13,935)	21	6,110	219	42,862 (41,886)
광 로	5	35,090 (5,574)	4	34,710 (5,194)	-	-	1	380
대 로	4	17,911 (17,016)	-	-	1	186	3	17,725 (16,830)
중 로	18	10,681 (9,712)	4	4,105 (3,136)	4	2,820	10	3,756
소 로	247	29,710 (29,629)	26	5,605	16	3,104	205	21,001 (20,920)

주) 연장 란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항임.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42	10	국지 도로	153	광 1-21	중 3-175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43	10	국지 도로	424	중 3-175	소 1-42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33	8	국지 도로	237	중 3-172	소 1-26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355	4	국지 도로	88	소 3-276	소 3-277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356	4	국지 도로	45	소 3-161	소 3-16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357	4	국지 도로	18	양재동 81	소 3-199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358	4	국지 도로	22	소 3-187	양재동 325-2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359	4	국지 도로	60	소 3-48	양재동 316-10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360	6	국지 도로	77	소 3-190	소 3-208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361	6	국지 도로	298	소 3-208	소 3-208	일반 도로	-	-
기정	광로	1	21	50	주간선 도로	7,180 (1,434)	한남대교 남단	양재동 광장	일반 도로	89.07.10 (건고제278호)	강남대로
기정	광로	1	28	50~ 60	주간선 도로	13,000 (1,648)	천호동 광6	과천시계	일반 도로	87.06.09 (서고제406호)	양재대로 일부 폭원변경
기정	광로	1	33	50~ 61	주간선 도로	7,580 (423)	광 1-28 (양재동)	광 1-29 (송파구 장지동)	일반 도로	72.03.06 (건고78)	현릉로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광로	1	84	50	주간선 도로	6,950 (1,689)	서초동 (신원I.C)	서초구 신원동	자동차 전용 도로	91.03.21 (건고제145호)	경부 고속도로 일부 선형변경
기정	광로	3	-	41~ 44	집산 도로	380	양재동 222 광 1-28	양재동 224 지구계	일반 도로	01.09.22 (서초구고시 제312호)	양재대로 12길
변경	광로	3	1	41~ 45	집산 도로	380	양재동 222 광 1-28	양재동 224 지구계	일반 도로	01.09.22 (서초구고시 제312호)	양재대로 12길
기정	대로	2	104	33~ 45	보조 간선 도로	186	중1-241	지구계	일반 도로	-	태봉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77	25	주간선 도로	998 (103)	광1-21	중 2-249	일반 도로	-	바우외길
기정	대로	3	78	25.5	주간선 도로	210	광1-28	소3-266	일반 도로	-	양재대로 11길
변경	대로	3	78	25.5	주간선 도로	188	광1-28	소3-266	일반 도로	-	양재대로 11길
기정	대로	3	208	6.4~29 .4	주간선 도로	16,329	광명시계	강남구 포이동 277	자동차 전용 도로	02.05.27 (서고제198호)	서울시 구간에 한함 (강남순환고속도 로)
기정	중로	1	233	20	보조 간선 도로	1,685 (757)	광1-21	중1-234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
기정	중로	1	234	20~ 23	보조 간선 도로	1,171 (1,130)	광1-28	광1-21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경기부분 제외, 폭원확장
변경	중로	1	234	20~ 23.5	보조 간선 도로	1,171 (1,130)	광1-28	광1-21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경기부분 제외, 폭원확장
기정	중로	1	236	20	보조 간선 도로	729	광1-21	대 2-30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근린공원 일부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241	20~ 77	집산 도로	520	중1-233	대2-104	일반 도로	15.10.29 (서고제334호)	-
기정	중로	2	247	15	보조 간선 도로	510	중 1-236	중 2-248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
기정	중로	2	248	15	보조 간선 도로	945	광 1-21	대 2-30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동산로
기정	중로	2	259	15~ 27.5	집산 도로	179	광 1-33	하천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중로	2	514	14~ 29	집산 도로	1,186	광 1-21	중1-241	일반 도로	15.10.29 (서고334호)	중복결정 -도로:광1-84, 중1-233 -하천:13,451.6 ㎡ -공원:3,845.5㎡ -녹지:830.7㎡
기정	중로	3	171	12	집산 도로	690	광 1-21	대 2-30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
기정	중로	3	172	12	집산 도로	525	중 2-247	중 2-248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73	12	집산 도로	206	중 2-247	중 3-174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
기정	중로	3	174	12	집산 도로	600	중 1-236	중 2-248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
기정	중로	3	175	12	집산 도로	256	중 2-248	소 1-6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
기정	중로	3	176	12	집산 도로	248	중 2-248	소 1-6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
기정	중로	3	177	12	집산 도로	144	중 2-248	소 1-8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
기정	중로	3	180	12	집산 도로	775	광 1-21	중1-233	일반 도로	83.09.07 (건고제296호)	양재천길
기정	중로	3	182	12	집산 도로	114	중 1-234	소 3-266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중로	3	182	12~25.5	집산 도로	114	중 1-234	소 3-26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중로	3	A	13	국지 도로	198	중 1-234	소 3-18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54	대 3-77	중 3-171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41	대 3-77	중 3-171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44	대 3-77	중 3-171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36	대 3-77	중 3-171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01	광 1-33	염곡동 102	일반 도로	95.06.26 (서초구고시 제33호)	-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12	대 2-30	중 3-17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442	중 3-175	중 3-176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1	6	10	국지 도로	652	소 1-36	중 3-17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206	중 3-176	중 3-175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1	7	10	국지 도로	191	중 3-176	중 3-17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76	중 3-177	소 3-9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14	10	국지 도로	128	중 3-172	소 3-44	일반 도로	88.12.31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6	10	국지 도로	172	중 1-233	중 3-18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199	중 1-233	중 3-18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19	10~ 16	국지 도로	155	광 3-1	지구계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26	10	국지 도로	190	중 1-236	중 3-172	일반 도로	93.03.18 (서고 제77호)	-
기정	소로	1	28	10	특수 도로	245	중 2-248	중 3-172	보행자 전용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29	10	국지 도로	390	중 2-248	양재동 363-6	일반 도로	93.03.18 (서고 제77호)	-
기정	소로	1	30	10	국지 도로	360	광 1-21	중 3-176	일반 도로	94.10.13 (서고 제32호)	-
기정	소로	1	33	10	국지 도로	136	중 3-176	소 1-29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1	33	10	국지 도로	85	중 3-176	소 1-2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34	10	특수 도로	119	중 2-247	소 1-28	보행자 전용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35	10	특수 도로	10	소 1-29	광 1-28	보행자 전용 도로	04.12.10 (서고 제408호)	-
기정	소로	1	-	10	일반 도로	165	양재동 298	대 2-30	일반 도로	93.03.18 (서고 제77호)	-
변경	소로	1	36	10	국지 도로	165	양재동 298	대 2-30	일반 도로	93.03.18 (서고 제77호)	-
기정	소로	1	-	10	특수 도로	36	중 2-247	소 2-7	보행자 전용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1	37	10	특수 도로	36	중 2-247	소 2-7	보행자 전용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1	-	10	특수 도로	81	소 2-7	양재동 298	보행자 전용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1	38	10	특수 도로	81	소 2-7	양재동 298	보행자 전용 도로	88.12.31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750	양재동 100	양재동 227-2	일반 도로	97.06.17 (서초구고시 제29호)	부채도로
변경	소로	1	39	10	국지 도로	750	양재동 100	양재동 227-2	일반 도로	97.06.17 (서초구고시 제29호)	부채도로
기정	소로	1	A	10~ 11	국지 도로	399	우면동 143-3	우면동 142	일반 도로	22.06.16 (서초구고시 제124호)	하천 중복결정 (중복면적 4,622㎡)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95	중 3-172	소 2-3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66	중 3-174	소 3-5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66	중 3-173	소 2-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20	중 3-174	중 3-17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76	소 1-6	소 3-9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36	중 3-176	소 1-2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188	중 1-233	중 3-18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08	소 3-172	소 3-3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19	8	국지 도로	168	소 1-17	소 1-17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20	11	국지 도로	38	중 1-234	소 3-18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358	중 1-241	우면동 2-8 소3-27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138	중 3-177	양재동 390-2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579	중 3-172	소 3-44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2	30	8	국지 도로	349	소 1-26	소 3-4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101	염곡동 300-6	염곡동 300-4	일반 도로	92.03.19 (서고 제85호)	-
변경	소로	2	31	8	국지 도로	101	염곡동 300-6	염곡동 300-4	일반 도로	92.03.19 (서고 제85호)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260	양재동 126-2	양재동 99-4	일반 도로	98.02.23 (서초구고시 제6호)	태봉로 연결도로
변경	소로	2	32	8	국지 도로	260	양재동 126-2	양재동 99-4	일반 도로	98.02.23 (서초구고시 제6호)	태봉로 연결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25	대 2-30	소 3-9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35	광 2-19	소 3-28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56	소 3-285	소 3-28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264	대 3-77	중 3-171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70	중 3-171	소 3-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97	중 3-171	소 3-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99	중 3-171	소 3-19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98	중 3-171	소 3-19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97	중 3-171	소 3-19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96	중 3-171	소 3-19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74	소 1-2	소 1-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95	중 3-171	소 3-1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94	소 3-16	소 3-1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92	중 2-171	소 3-1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110	소 1-3	소 3-2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90	중 3-171	소 3-1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89	중 3-171	소 3-1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131	대 3-77	중 3-171	일반 도로	88.12.31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162	소 3-22	소 3-2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641	소 2-30	소 3-48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27	6	국지 도로	548	소 2-30	소 3-4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8	6	국지 도로	36	소 2-30	소 3-27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30	6	국지 도로	140	소 1-26	중 2-247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30	6	국지 도로	172	중 2-247	소 1-2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44	소 2-30	소 3-3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32	6	국지 도로	54	소 2-30	소 3-3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65	중 3-172	소 3-30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33	6	국지 도로	65	소 2-31	소 3-3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34	6	국지 도로	36	소 2-30	소 3-27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60	소 2-4	소 3-3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36	6	국지 도로	33	소 3-35	소 2-3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37	6	국지 도로	71	중 3-172	소 3-3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38	6	국지 도로	79	소 1-14	소 3-20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39	6	국지 도로	71	중 3-172	소 3-3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40	6	국지 도로	98	중 3-172	소 2-3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41	6	국지 도로	56	소 2-30	소 3-4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42	6	국지 도로	56	소 2-30	소 3-4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43	6	국지 도로	96	소 2-30	소 3-4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44	6	국지 도로	35	소 1-14	소 3-27	일반 도로	88.12.31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1	40	6~10	국지 도로	35	소 1-14	소 3-27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46	6	국지 도로	88	소 3-27	소 3-187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48	6	국지 도로	86	중 2-248	소 3-27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49	6	국지 도로	132	양재동 324-2	소 1-1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50	6	국지 도로	36	중 1-236	소 3-51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51	6	국지 도로	206	중 2-247	소 2-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53	6	국지 도로	198	소 2-6	소 3-51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55	6	국지 도로	156	소 2-5	소 3-5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56	6	국지 도로	34	중 3-174	소 3-5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57	6	국지 도로	76	소 2-6	소 3-5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58	6	국지 도로	116	중 3-174	소 2-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59	6	국지 도로	402	중 3-174	중 3-17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59	6	국지 도로	381	중 3-174	중 3-17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60	6	국지 도로	108	중 3-183	소 3-5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61	6	국지 도로	76	중 3-174	소 3-5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62	6	국지 도로	98	소 3-59	소 3-61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63	6	국지 도로	36	중 2-247	소 2-7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64	6	국지 도로	298	중 3-173	중 3-17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65	6	국지 도로	96	중 3-173	소 3-6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66	6	국지 도로	310	소 2-7	소 2-7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66	6	국지 도로	293	소 2-7	소 2-7	일반 도로	88.12.31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7	6	국지 도로	106	소 2-7	소 3-6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68	6	국지 도로	290	중 3-174	중 3-174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68	6	국지 도로	272	중 3-174	중 3-17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69	6	국지 도로	106	소 3-68	소 3-6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70	6	국지 도로	36	중 2-248	소 2-7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71	6	국지 도로	224	소 1-6	소 1-6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71	6	국지 도로	206	소 1-43	소 1-4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72	6	국지 도로	224	소 1-6	소 1-6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72	6	국지 도로	192	소 1-6	소 1-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73	6	국지 도로	292	소 1-7	소 1-7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74	6	국지 도로	79	소 1-7	소 3-7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75	6	국지 도로	79	소 1-7	소 3-7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76	6	국지 도로	288	소 1-6	소 1-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77	6	국지 도로	76	소 1-6	소 3-7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78	6	국지 도로	76	소 1-6	소 3-7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79	6	국지 도로	86	중 3-176	소 1-2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80	6	국지 도로	130	중 3-176	소 2-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81	6	국지 도로	74	중 3-176	소 2-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82	6	국지 도로	60	소 3-348	소 2-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83	6	국지 도로	90	소 1-6	소 3-9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84	6	국지 도로	90	소 1-6	소 3-92	일반 도로	88.12.31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85	6	국지 도로	88	소 1-6	소 3-9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86	6	국지 도로	88	소 1-6	소 3-9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87	6	국지 도로	88	소 1-6	소 3-9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88	6	국지 도로	88	소 1-6	소 3-9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89	6	국지 도로	90	소 2-9	소 3-9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90	6	국지 도로	100	소 2-9	소 3-9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91	6	국지 도로	117	소 1-33	소 3-9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92	6	국지 도로	513	소 1-29	소 3-8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93	6	국지 도로	100	소 1-8	소 3-9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94	6	국지 도로	100	소 1-8	소 3-9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95	6	국지 도로	100	소 1-8	소 3-9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96	6	국지 도로	560	중 3-177	소 2-2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97	6	국지 도로	104	소 1-8	소 3-9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98	6	국지 도로	104	소 1-8	소 3-9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56	6	국지 도로	250	중 1-233	소 3-18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57	6	특수 도로	45	광 1-21	소 3-156	보행자 전용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58	6	국지 도로	148	소 2-14	소 3-15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59	6	국지 도로	116	소 2-14	소 3-15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60	6	국지 도로	70	소 3-156	소 3-15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61	6	국지 도로	110	소 1-16	소 2-1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62	6	국지 도로	50	소 3-161	소 3-163	일반 도로	88.12.31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3	6	국지 도로	110	소 1-16	소 2-1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64	6	국지 도로	100	중 3-180	소 3-16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64	6	국지 도로	100	중 3-180	소 3-16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65	6	국지 도로	95	중 3-180	소 3-16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66	6	국지 도로	162	소 1-16	소 3-16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67	6	국지 도로	76	소 3-166	소 3-16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68	6	국지 도로	61	중 3-180	소 3-16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69	6	국지 도로	154	중 3-180	소 1-1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70	6	국지 도로	44	중 3-180	소 3-16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71	6	국지 도로	127	중 3-180	소 3-16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80	6	국지 도로	162	중 1-234	소 3-181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180	6	국지 도로	184	중 1-234	소 3-181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81	6	국지 도로	72	중 1-234	소 3-18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82	6~ 7.5	국지 도로	242	소 2-19	소 2-20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182	6~ 7.5	국지 도로	234	소 2-19	소 2-2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83	6	국지 도로	50	소 3-182	소 3-18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84	6~ 7.5	국지 도로	201	소 3-182	소 1-17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85	6	국지 도로	84	중 3-172	소 3-4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86	6	국지 도로	62	소 3-49	소 3-4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87	6	국지 도로	107	소 3-49	소 3-4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88	6	국지 도로	198	중 2-248	소 3-8	일반 도로	88.12.31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188	6	국지 도로	117	중 2-248	소 3-19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89	6	국지 도로	155	중 2-248	소 3-8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189	6	국지 도로	155	중 2-248	소 3-20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90	6	국지 도로	70	녹도 14	소 3-189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190	6	국지 도로	70	소 1-29	소 3-18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91	6	국지 도로	104	소 3-189	소 3-19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92	6	국지 도로	78	소 3-189	소 3-19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93	6	국지 도로	50	소 1-189	소 3-194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193	4	국지 도로	50	소 1-189	소 3-194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94	6	국지 도로	104	소 3-191	소 3-8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194	6	국지 도로	104	소 3-191	소 3-20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95	6	국지 도로	149	중 2-248	소 3-8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195	6	국지 도로	149	중 2-248	소 3-20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96	6	국지 도로	119	소 3-9	소 3-198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196	6	국지 도로	119	소 3-208	소 3-361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97	6	국지 도로	63	소 3-198	소 3-198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197	6	국지 도로	63	소 3-361	소 3-361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98	6	국지 도로	290	소 3-8	소 3-171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198	4	국지 도로	52	소 3-8	소 3-171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199	6	국지 도로	161	소 1-2	소 3-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00	6	국지 도로	126	중 1-233	소 1-18	일반 도로	88.12.31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200	6	국지 도로	137	중 1-233	소 1-1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01	6	국지 도로	78	중 3-172	소 3-4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02	6	국지 도로	80	중 3-172	소 2-30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202	6	국지 도로	69	중 3-172	소 2-3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03	6	국지 도로	45	중 2-247	소 3-33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203	6	국지 도로	35	중 2-247	소 3-3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04	6	국지 도로	75	소 2-6	소 3-5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05	6	국지 도로	75	소 2-6	소 3-5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06	6	국지 도로	75	소 2-6	소 3-55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07	6	국지 도로	74	중 3-176	소 1-2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08	6	국지 도로	231	중 3-177	소 1-29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09	6	국지 도로	95	소 1-6	소 3-9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10	6	국지 도로	76	소 1-6	소 3-7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11	6	국지 도로	79	소 1-7	소 3-7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66	6	국지 도로	427	중 1-234	지구계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69	6	국지 도로	101 (20)	소 2-18	소 2-266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73	6	국지 도로	322	소 3-272	소 3-278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273	6	국지 도로	316	소 3-272	소 3-278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74	6	국지 도로	139	소 2-22	소 3-27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75	6	국지 도로	114	소 3-274	소 3-277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76	6	국지 도로	114	소 3-274	소 3-277	일반 도로	88.12.31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77	6	국지 도로	139	소 2-22	소 3-27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78	6	국지 도로	187	중 1-241	소 3-276	일반 도로	88.12.31	-
변경	소로	3	278	6	국지 도로	187	중 1-241	소 3-277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79	6	국지 도로	66	소 3-278	소 3-27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80	6	국지 도로	36	소 2-22	소 3-273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82	6	국지 도로	383	광 2-19	대 2-30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83	6	국지 도로	84	광 2-19	소 3-28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84	6	국지 도로	75	광 2-19	소 3-28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85	6	국지 도로	219	소 3-284	소 3-282	일반 도로	88.12.31	-
기정	소로	3	290	6	국지 도로	73	중 1-236	소 3-2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91	6	국지 도로	103	소 1-8	소 3-9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92	6	국지 도로	49	소 3-273	소 3-275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292	4	국지 도로	49	소 3-273	소 3-27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94	6	국지 도로	41	소 3-273	소 3-278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294	4	국지 도로	41	소 3-273	소 3-27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99	6	국지 도로	26	소 2-23	소 3-30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299	4	국지 도로	26	소 2-23	소 3-30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00	6	국지 도로	101	광 2-19	소 3-28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01	6	국지 도로	53	소 3-283	소 3-284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01	4	국지 도로	53	소 3-283	소 3-28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02	6	국지 도로	22	소 1-14	양재동 319-2	일반 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302	4	국지 도로	22	소 1-14	양재동 319-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03	6	국지 도로	38	소 3-185	소 3-201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03	4	국지 도로	38	소 3-185	소 3-20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05	6	국지 도로	67	소 3-196	소 3-208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05	4	국지 도로	67	소 3-196	소 3-20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06	6	국지 도로	89	소 3-196	소 3-309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06	4	국지 도로	89	소 3-196	소 3-30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07	6	국지 도로	65	소 1-29	소 3-306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07	4	국지 도로	65	소 1-29	소 3-30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08	6	국지 도로	62	소 3-198	소 3-198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08	4	국지 도로	62	소 3-361	소 3-36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09	6	국지 도로	214	소 2-24	소 1-29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09	4	국지 도로	214	소 2-24	소 1-2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12	6	국지 도로	58	중 1-234	소 3-182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12	4	국지 도로	58	중 1-234	소 3-18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13	6	국지 도로	62	중 1-234	소 3-182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13	4	국지 도로	62	중 1-234	소 3-18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15	6	특수 도로	30	광 1-21	소 3-27	보행자 전용 도로	-	-
기정	소로	3	316	6	특수 도로	22	광 1-21	소 3-27	보행자 전용 도로	-	-
기정	소로	3	317	6	국지 도로	20	소 3-349	소 3-27	일반 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18	6	국지 도로	16	소 3-71	소 1-3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18	6	국지 도로	16	소 3-71	소 1-4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19	6	국지 도로	16	소 3-71	소 1-3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19	6	국지 도로	16	소 3-71	소 1-4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20	6	특수 도로	16	소 3-72	소 1-30	보행자 전용 도로	-	-
변경	소로	3	320	6	특수 도로	16	소 3-72	소 1-42	보행자 전용 도로	-	-
기정	소로	3	321	6	국지 도로	16	소 3-72	소 1-3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21	6	국지 도로	16	소 3-72	소 1-4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22	6	국지 도로	13	소 3-73	소 1-3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23	6	국지 도로	14	소 3-73	소 1-3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24	6	국지 도로	9	소 3-76	소 1-3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25	6	국지 도로	13	소 3-76	소 1-3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26	6	국지 도로	15	소 3-64	양재동 29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27	6	국지 도로	15	소 3-64	양재동 29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28	6	국지 도로	15	소 3-66	양재동 29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29	6	국지 도로	15	소 3-66	양재동 29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35	6	국지 도로	20	소 3-345	소 3-5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36	6	국지 도로	25	대 2-30	소 3-5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40	6	국지 도로	20	양재동 349-31	소 3-9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41	6	국지 도로	20	양재동 349-30	소 3-92	일반 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42	6	국지 도로	20	소 3-346	소 3-6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43	6	국지 도로	20	소 3-347	소 3-9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44	6	국지 도로	20	소 3-23	양재동 84-1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45	6	특수 도로	5	대 2-30	소 3-335	보행자 전용 도로	04.12.10 (서고 제408호)	-
기정	소로	3	346	6	특수 도로	5	대 2-30	소 3-342	보행자 전용 도로	04.12.10 (서고 제408호)	-
기정	소로	3	347	6	특수 도로	5	대 2-30	소 3-343	보행자 전용 도로	04.12.10 (서고 제408호)	-
기정	소로	3	348	6	특수 도로	10	광 1-21	소 3-82	보행자 전용 도로	04.12.10 (서고 제408호)	-
기정	소로	3	349	6	특수 도로	10	광 1-21	소 3-317	보행자 전용 도로	04.12.10 (서고 제408호)	-
기정	소로	3	350	6	국지 도로	15	소 1-36	소 3-6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51	6	국지 도로	35	양재동 20-38	양재동 20-39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51	4	국지 도로	35	양재동 20-38	양재동 20-3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52	6	국지 도로	55	양재동 20-43	양재동 20-39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52	4	국지 도로	55	양재동 20-43	양재동 20-3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53	6	국지 도로	15	소 1-36	소 3-5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54	6	국지 도로	49	소 3-273	소 3-275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54	4	국지 도로	49	소 3-273	소 3-275	일반 도로	-	-

주) 연장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항임.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42	소로 신설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	소로 1-43	소로 신설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	소로 2-33	소로 신설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	소로 3-355	소로 신설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	소로 3-356	소로 신설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	소로 3-357	소로 신설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	소로 3-358	소로 신설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	소로 3-359	소로 신설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	소로 3-360	소로 신설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	소로 3-361	소로 신설	도로 노선번호 중복으로 노선번호 부여
광로 3-	광로 3-1	교차로 정형화 및 노선 번호부여	내부 순화교통체계를 위해 화물터미널 인근 교차로 정형화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대로 3-78	대로 3-78	도로연장 변경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중로 1-234	중로 1-234	도로폭원 확폭 폭원 : 20 ⇒ 23.5m	대상지 내 순화교통체계를 위해 도로폭원 확폭
중로 3-182	중로 3-182	도로폭원 확폭 폭원 : 12 ⇒ 12~25.5m	대상지 내 순화교통체계를 위해 도로폭원 확폭
소로 1-2	소로 1-2	도로연장 변경 연장 : 154 ⇒ 141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1-3	소로 1-3	도로연장 변경 연장 : 144 ⇒ 136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1-6	소로 1-6	기종점 및 연장 변경 연장 : 652 ⇒ 206m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중복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연장 변경 및 기종점 변경
소로 1-7	소로 1-7	도로연장 변경 연장 : 206 ⇒ 191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1-33	소로 1-33	도로연장 변경 연장 : 136 ⇒ 85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1-	소로 1-36	노선번호부여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소로 1-	소로 1-37	노선번호부여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소로 1-	소로 1-38	노선번호부여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소로 1-	소로 1-39	노선번호부여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30	소로 2-30	기종점 및 연장 변경 연장 : 579 ⇒ 349m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중복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연장 변경 및 기종점 변경
소로 2-	소로 2-31	노선번호부여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소로 2-	소로 2-32	노선번호부여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번호 부여
소로 3-27	소로 3-27	도로연장 변경 연장 : 641 ⇒ 548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3-30	소로 3-30	기종점 및 연장 변경 연장 : 140 ⇒ 172m	조서 정정으로 인한 기종점 및 연장 변경
소로 3-33	소로 3-33	기점 변경	조서 정정으로 인한 기점 변경
소로 3-44	소로 1-40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6~10m	도로 현황을 고려하여 규모 변경
소로 3-66	소로 3-66	도로연장 변경 연장 : 310 ⇒ 293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3-68	소로 3-68	도로연장 변경 연장 : 290 ⇒ 272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3-71	소로 3-71	기종점 및 연장 변경 연장 : 224 ⇒ 206m	소로 1-43 신설로 인한 기종점 변경 및 연장 오기로 정정
소로 3-72	소로 3-72	도로연장 변경 연장 : 224 ⇒ 192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3-180	소로 3-180	도로연장 변경 연장 : 162 ⇒ 18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3-182	소로 3-182	도로연장 변경 연장 : 242 ⇒ 23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3-188	소로 3-188	기종점 및 연장 변경 연장 : 198 ⇒ 117m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중복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연장 변경 및 기종점 변경
소로 3-189	소로 3-189	종점 변경	조서 정정으로 인한 종점 변경
소로 3-190	소로 3-190	기점 변경	조서 정정으로 인한 기점 변경
소로 3-193	소로 3-193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194	소로 3-194	종점 변경	조서 정정으로 인한 종점 변경
소로 3-195	소로 3-195	종점 변경	조서 정정으로 인한 종점 변경
소로 3-196	소로 3-196	기종점 변경	조서 정정으로 인한 기점 변경 소로 3-361 신설로 인한 종점 변경
소로 3-197	소로 3-197	기종점 변경	소로 3-361 신설로 인한 기종점 변경
소로 3-198	소로 3-198	도로폭원 및 연장 변경 폭원 : 6 ⇒ 4m 연장 : 290 ⇒ 52m	노선번호 중복으로 인한 폭원 및 연장 변경
소로 3-200	소로 3-200	도로연장 변경 연장 : 126 ⇒ 137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202	소로 3-202	도로연장 변경 연장 : 80 ⇒ 69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3-203	소로 3-203	도로연장 변경 연장 : 45 ⇒ 35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3-273	소로 3-273	도로연장 변경 연장 : 322 ⇒ 316m	조서 정정으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 3-278	소로 3-278	종점 변경	조서 정정으로 인한 종점 변경
소로 3-292	소로 3-292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294	소로 3-294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299	소로 3-299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01	소로 3-301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02	소로 3-302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03	소로 3-303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05	소로 3-305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06	소로 3-306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07	소로 3-307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08	소로 3-308	기종점 및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61 신설로 인한 기종점 변경
소로 3-309	소로 3-309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12	소로 3-312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13	소로 3-313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18	소로 3-318	종점 변경	소로 1-42 신설로 인한 종점 변경
소로 3-319	소로 3-319	종점 변경	소로 1-42 신설로 인한 종점 변경
소로 3-320	소로 3-320	종점 변경	소로 1-42 신설로 인한 종점 변경
소로 3-321	소로 3-321	종점 변경	소로 1-42 신설로 인한 종점 변경
소로 3-351	소로 3-351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52	소로 3-352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소로 3-354	소로 3-354	도로폭원 변경 폭원 : 6 ⇒ 4m	조서 정정으로 인한 폭원 변경

- 2) 철도 : 변경없음
 3) 주차장 : 변경없음
 4) 자동차정류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1) 광장 : 변경없음
 2) 녹지 : 변경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경부고속도로 중심선 에서 50m이내	137,700	-	137,700	96.05.22 (서고 제77호)	-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강남대로변	13,705	-	13,705	96.05.22 (서고 제77호)	-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양재대로변	20,349	감) 332	20,017	-	-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논현로변	2,923	-	2,923	-	-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양재동 213-8	2,770	-	2,770	-	-
변경	⑥	녹지	완충녹지	양재동 217-14일대	2,086	감) 1,378	708	-	-
기정	⑦	녹지	완충녹지	양재천변	11,610	-	11,610	88.12.31	-
변경	⑧	녹지	완충녹지	양재동 232일대	3,873	감) 55	3,818	04.12.15 (서고 제108호)	-
기정	㉠	녹지	완충녹지	양재동 213	7,042.4	-	7,042.4	09.06.25 (서고 제250호)	-
기정	㉡	녹지	완충녹지	양재동 231-9, 213-10	1,654.3	-	1,654.3	09.06.25 (서고 제250호)	-

나)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녹지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감소 - 감) 332㎡	• 양재대로 173(주유소 부지) 진 · 출입로 확보 및 내부 순환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 면적 감소
⑥	녹지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감소 - 감) 1,378㎡	• 내부 순환교통체계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폭원 확폭에 따른 완충녹지 일부 폐지
⑧	녹지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감소 - 감) 55㎡	• 교통영향평가 시, 공동주차출입구 공간 확보로 인한 완충녹지 면적 감소

3) 공원 : 변경없음

다 유통공급설비

- 1) 유통업무설비 : 변경없음
- 2)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3) 시장 :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1) 학교 : 변경없음
- 2) 도서관 : 변경없음
- 3) 연구시설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 1) 하천 : 변경없음
- 2) 유수지 : 변경없음

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자율적 공동건축 기준 : 변경

구 분	최대개발규모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기정	• 600㎡ 이하 또는 6개 필지 이하 • 609㎡ 이내 (서초구고시 제2012-64호) - 양재동 83-2, 83-10	-	-
변경	제1·2·3종일반주거지역 • 강남대로변 : 3,000㎡ 이하 • 동산로변, 바우외로변, 양재천로변, 노현로변, 미방로변, 양재대로변, 남부순환로변 : 1,500㎡ 이하 • 이면부 : 1,000㎡ 이하 ※ 단,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지정 시 최대개발규모 미적용	-	-

※ 기 공동개발 필지로 필지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최대개발규모 적용 제외

나. 자율적 공동건축 기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최대 개발 규모	◦ 600㎡이하 또는 6개 필지 이하 ◦ 609㎡이내 (서초구고시 제2012-64호) - 양재동 83-2, 83-10	◦ 강남대로변 : 3,000㎡이하	◦ 간선변(역세권 일대) 개발추세 및 여건변화 반영
		◦ 동산로변, 바우외로변, 양재천로변, 논현로변, 마방로변, 양재대로변 남부순환로변 : 1,500㎡이하	◦ 주요가로변 개발추세 반영
		◦ 이면부 : 1,000㎡ 이하	◦ 이면부 평균 필지규모 고려

다. 블록단위 개발시 공동건축 : 변경

구분	블록단위 개발 공동건축	비고
기정	◦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단위 대지의 최대개발규모에도 불구하고 블록단위 개발에 의한 공동주택 (7층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축을 허용 ◦ 원칙적으로 블록의 설정은 주민제안에 의거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주변 지역 접근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가구 내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 - 10m 이상 도로를 경계로 구획된 일단의 블록으로서 계획세대수 300세대 이상 또는 면적이 10,000㎡ 이상인 블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로 제한 ◦ 블록단위 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건축 시 현재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은 전적으로 불허하되, 개발밀도는 기준/상한 용적률은 180%/230%, 최고높이 제한은 배제하고 7층 이하로 적용 - 지구단위계획 지침수용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 적용은 없음	-
변경	◦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최대개발규모에도 불구하고 블록단위 개발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 - 8m 이상 도로를 경계로 구획된 일단의 블록으로서 계획세대수 200세대 이상 충족할 경우로 제한 - 개발밀도는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적용 (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 양재동 일대 미래융합(AI-R&D)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블록단위 개발 시 R&D시설을 도입하고, 시설규모 및 구체적 용도 등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불허용도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분 류	불 허 용 도	비 고
기정	일반 주거 지역	간선 도로변 A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아파트 (블록단위 공동건축시에 한해 제외)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공공용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시설 제외)	-
		제1종 B	• 공동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공공용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시설 제외)	-
		제2종 이면부 C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아파트 (블록단위 공동건축시에 한해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상점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공공용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시설 제외)	-

구 분		분 류		불 허 용 도	비 고
기정	일반 주거 지역	제3종 및 연접한 제2종	D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아파트 (블록단위 공동건축시에 한해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공공용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시설 제외)	-
	일반 상업 지역	간선 도로변	E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	-
	자연녹 지지역	교육 문화 회관	F	•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위락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구 분	분 류	불 허 용 도	비 고
변경	공통사항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과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양재천 로변	A • 공동주택 중 아파트(블록단위 공동건축시에 한해 제외)	-
	일반 주거 지역	간선도 로변 및 동산로변 B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아파트(블록단위 공동건축시에 한해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
	이면부	C • 공동주택 중 아파트(블록단위 공동건축시에 한해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종교집회장 제외)	-
	간선 도로변, 농수산물 도매시장 /창고 (양재동 229외2)	D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
	일반상 업지역	E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숙박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위락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야영장 시설	-
	자연녹 지지역	F •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위락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계획 지침에 따름

나. 권장용도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분류	용도지역	권 장 용 도	비 고
기정	양재대로변 및 이면부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
	강남대로변 및 연접지역, 동산로변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생활시설	-
	논현로변 및 바우미로변	다	제3종일반 주거지역	• 판매 및 영업시설 • 근린생활시설	-
	개포지구중심	라	일반상업지역	• 업무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경부고속도로변	마	자연녹지지역	• 묘목장 또는 공원·녹지에 준하는 시설 • 자치구행정관리에 필요한 임시공공시설	-
변경	주거지 이면부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제조업소, 수리점 (R&D지원용도)	-
	양재천로변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휴게음식점(1층)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제조업소, 수리점 (R&D지원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	-
	동산로변, 마방로변	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가로활성화용도(1층))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제조업소, 수리점 (R&D지원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	-
	강남대로변, 논현로변, 바우미로변, 남부순환로변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가로활성화용도(1층))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개포지구중심	마	일반상업지역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가로활성화용도(1층))	-

※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공용면적을 제외한 당해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당해 용도로 건축하여야 함
(다만, 가로활성화용도, 휴게음식점은 1층부 바닥면적 50% 이상 설치시 인정)

※ 가로활성화용도 및 R&D 지원용도는 유사한 것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용도 변경적용 가능

다. 지정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역세권 청년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주1)	-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항의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적률 결정조서 : 변경

○ 기정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자연녹지지역		40%이하	50%이하	-	-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130%이하	150%이하	-	-
	제2종	180%이하	200%이하	-	-
		-	200%이하	-	우면동 141번지 (품질시험소별관)
	제3종	220%이하	250%이하	-	-
		220%이하	250%이하	250%이하	102번지, 212번지 (양재리본타워)
준주거지역		-	320%이하	-	유통업무설비시설
일반상업지역		-	400%이하	-	유통업무설비시설
		250%이하	400%이하	-	특별계획구역 (KCTC부지)
		-	300%이하	-	양재동 229번지 (창고)
		-	100%이하	-	양재동 229-7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600%이하	800%이하	-	삼호물산 일대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680%이하		874.64%	

※ 일반주거지역 내 블록단위 공동건축시 기준/상한용적률은 180%이하/ 230%이하임 (공공용지부담률 10%이상)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변경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자연녹지지역		40%이하	50%이하 (100%이하)주1)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13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제2종	18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	200%이하	-	우면동 141번지 (품질시험소별관)
	제3종	22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220%이하	250%이하	250%이하	102번지, 212번지 (양재리본타워)
	준주거지역	250%이하	320%이하 (400%이하)주2)	-	특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250%이하	400%이하 (600%이하)주2)	-	특별계획구역
		-	300%이하	-	양재동 229번지 (창고)
		-	100%이하	-	양재동 229-7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600%이하	800%이하	-	삼호물산 일대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680%이하		874.64%	

주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여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완화 시 적용

주2) R&D공간 확충의 공공필요성 전제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0%(준주거80%) 추가 부여 가능하며, 추가 확충하는 건축규모 중 1/2(토지+건축)은 공공에 기부채납 조건

※ 일반주거지역내 블록단위 공동건축시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기준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다. 완화기준 설정표 : 변경

○ 기정

구 분	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
용도 사항	1. 권장용도	• 권장용도 수용시 (이면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외)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면적} \div \text{주차장제한 건축연면적}) \times 0.2$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 이면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주거용도로 건축할 경우	$\text{기준용적률} \times 0.2 \times (\text{주거면적} \div \text{건축연면적})$
대지내 공지1)	2. 전면공지	• 조성시 (법정 공개공지 및 건축법36조2항에 의한 건축선 후퇴로 조성되는 공지부분 제외)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α -피로티형:0.5, 개방형:1.0)
	3. 공개공지	• 조성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α -피로티형:0.5, 침상형:0.8, 개방형:1.0)
대지내 통로	4. 공공보행통로2)	• 제공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8$
환경친화 적인 요소도입	5. 옥상녹화	• 옥상면적의 50%이상을 보급형 옥상녹화조성기법으로 녹화하는 경우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3$ (법적 설치의무면적제외)
	6. 녹색주차장	• 조성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0.05$
	7. 빗물저류조	• 우수의 활용을 위해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	$\text{기준용적률} \times 0.05$
밀도에 관한 사항	8. 건폐율	• 1층접지부 건폐율을 40%이하로 건축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0.5 \times (0.4 - 1\text{층접지부 건폐율})$

주1)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상의 설치의무 이상 면적을 제공할 경우에만 적용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및 공개공지 설치 의무면적은 완화 적용 제외)

주2) 지침도에 표기된 대지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되지 않은 대지의 경우 허가권자가 속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적용

○ 변경

－ Type A(제2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중점	건축물 용도	1.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연면적)×0.17	●2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2.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	기준용적률×0.022	●1층 벽면 길이 및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시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3. 공개공지 조성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형 α = 0.3 ●침상형 α = 0.5 ●개방형 α = 0.7
		4.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형 α = 0.3 ●개방형 α = 0.7
		5.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2	－
	친환경	6. 빗물이용시설	기준용적률×0.02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 (ton/hr)의 합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7.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8.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0.1	●기준용적률 × 0.05이내

－ Type B(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중점	건축물 용도	1.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연면적)×0.2	●2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2.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	기준용적률×0.025	●1층 벽면 길이 및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시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3. 공개공지 조성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형 α = 0.4 ●침상형 α = 0.6 ●개방형 α = 0.8
		4.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형 α = 0.4 ●개방형 α = 0.8
		5.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3	－

구 분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친환경	6. 빗물이용시설	기준용적률 $\times 0.03$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 (ton/hr)의 합 $\geq$ 건축면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times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7.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대지면적) $\times 0.2$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8.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대지면적) $\times 0.03$	• 기준용적률 $\times 0.05$ 이내

－ Type C(용도지역조정가능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향가능지)

구 분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중점	건축물 용도	1.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연면적)×0.4	●2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2.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	기준용적률×0.035	●1층 벽면 길이 및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시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3. 공개공지 조성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형 α = 0.8 ●침상형 α = 1.0 ●개방형 α = 1.2
		4.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형 α = 0.5 ●개방형 α = 1.0
		5.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5	-
	친환경	6. 빗물이용시설	기준용적률×0.05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 (ton/hr)의 합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7.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0.3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8.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0.05	●기준용적률 × 0.05이내

－ Type D(용도지역조정가능지 : 준주거지역 상향가능지)

구 분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중점	건축물 용도	1.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연면적)×1.15	●2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2.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	기준용적률×0.1	●1층 벽면 길이 및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시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3. 공개공지 조성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형 α = 0.8 ●침상형 α = 1.0 ●개방형 α = 1.2
		4.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형 α = 1.0 ●개방형 α = 1.4
		5.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8	－
	친환경	6. 빗물이용시설	기준용적률×0.1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 (ton/hr)의 합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7.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0.6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8.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0.7	●기준용적률 × 0.05이내

－ Type E(일반상업지역)

구 분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중점	건축물 용도	1.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연면적)×0.45	●2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2.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	기준용적률×0.055	●1층 벽면 길이 및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시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3. 공개공지 조성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형 α = 0.5 ●침상형 α = 0.8 ●개방형 α = 1.0

구 분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4.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파로티형 α = 0.5 ●개방형 α = 1.0
친환경	5. 빗물이용시설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 (ton/hr)의 합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6.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0.3	●법정 조정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7.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0.1	●기준용적률 × 0.05이내
	8. 미세먼지 저감장치	기준용적률×0.04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지역기여시설로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9. 건폐율	기준용적률×(0.4-건폐율)×0.5	●건폐율 40%이하 건축 시 적용

라.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높이 결정조서 : 변경

○ 기정

구 분	최고높이	계 획 기 준
강남대로, 논현로, 남부순환로	40m 이하	-
양재대로변	18m 이하	• 구통산 경관관리계획 반영
제1종일반주거지역	15m 이하	• 법정기준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m 이하	• 10m 이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24m 이하	• 구통산 경관관리계획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연구시설부지)	35m 이하	• 우면동 141(품질시험소 별관)
제3종일반주거지역(연구시설부지)	50m 이하	-
자연녹지지역	15m 이하	• 법정기준 준용
자연녹지지역(교육문화회관부지)	140m 이하	• 현황 및 개발계획 기준
양재동 102번지 시프트	88.4m 이하 (30층)	-
양재동 212번지 시프트	104.4m 이하 (35층)	-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65m 이하	• 가로구역별 높이에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 최고높이 마련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80m 이하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고려한 최고높이 계획

○ 변경

구 분		최고높이	계 획 기 준
강남대로, 논현로, 남부순환로		60m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m 이하	• 법정기준 준용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학교)		15m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5m 이하	-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40m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연구시설부지)		35m 이하	• 우면동 141(품질시험소 별관)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구시설부지)		60m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구시설부지)		150m 이하	• 우면동 221(LG전자 서초R&D캠퍼스)
자연녹지지역		40m 이하	-
자연녹지지역(교육문화회관부지)		60m 이하	-
양재동 102번지 시프트		88.4m 이하 (30층)	-
양재동 212번지 시프트		104.4m 이하 (35층)	-
양재동 275 (삼호물산 일대), 양재동 229외 2 (창고 / 농수산물도매시장)		100m이하	-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80m이하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고려한 최고높이 계획
특별 계획 구역	⑮, ⑯	40m 이하	•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 최고높이 마련
	⑭	65m 이하	
	⑧	100m 이하	
	①, ②, ⑤, ⑥, ⑦, ⑨, ⑩, ⑫, ⑬	120m 이하	
	③, ④, ⑪	150m 이하	

4.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배치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건축물의 방향성		• 강남대로, 논현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변	• 가로축과 대지형태에 건축물 방향을 일치시켜 방향성 부여
		• 우면동 141 (연구시설④-1)	• 우면산과 양재천의 녹지 생태축과 경관 연계 • 한국교육총연합회 차량출입구 주변 녹지축 훼손 최소화
건축선	건축한계선	• 1~2m 이하의 도로확폭이 필요한 가구 및 획지 •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가 이루어지는 지역 • 도로모퉁이 등 공개공지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 자연녹지지역(교육문화회관부지) • 우면동 141(연구시설④-1) • 특별계획구역 (KCTC 부지)	•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소요 폭원만큼 지정 • 3m(건축법 시행령 제31조) • 필요면적 또는 범위 • 7m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양재대로12길변 3m
	벽면한계선	• 과다하게 긴 가구 또는 간선도로변 대규모 대지와 이면부간의 보행통로가 필요한 경우	• 폭 4m이상 공공보행통로 확보

○ 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건축물의 방향성		• 강남대로, 논현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변	• 가로축과 대지형태에 건축물 방향을 일치시켜 방향성 부여
		• 우면동 141 (연구시설④-1)	• 우면산과 양재천의 녹지 생태축과 경관 연계 • 한국교육총연합회 차량출입구 주변 녹지축 훼손 최소화
건축선	건축한계선	• 1~2m 이하의 도로확폭이 필요한 가구 및 획지 • 주거지 내 4m 이상 도로 • 청계산로변 • 강남대로, 논현로, 동산로, 양재대로, 바우외로, 남부순환로, 우면동 141(연구시설④-1) • 자연녹지지역 (교육문화회관부지) • 현릉로변, 논현로변(삼호물산) • 바우외로6길변 (대한결핵협회) • 도로모퉁이 등 공개공지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 특별계획구역 - 매현로1길변 - 양재대로12길변 (KCTC부지) - 양재대로변, 양재대로11길변, 매현로변 - 바우외로12길변 (KT연구소부지) - 강남대로변, 현릉로변, 양재대로12길변	•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소요 폭원만큼 지정 • 1m • 2m • 3m • 7m • 10m • 12m • 필요면적 또는 범위 • 2m • 3m • 5m
	벽면한계선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화웨이광판장 양재대로변 - 바우외로6길변 (LG연구소부지)	• 7m • 10m • 12m

나. 건축물 형태계획 : 변경없음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 계획기준

구 분			지 정 목 적	적 용 대 상	조 성 방 식
기정	전면 공지	보도 연결형	• 보도의 확장	• 보도 설치에 충분한 폭원을 확보하지 못한 중로급 미만 도로변	• 기존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 공공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보행 장애시설 설치는 금지 • 보도의 신설인 경우는 보도폭원을 2m이상 확보
		도로 연결형	• 소로급 도로의 확장 • 공공보행통로 조성	•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거나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추가 도로확장이 곤란한 지역 •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보행통로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 2m 미만의 건축선 후퇴를 통해 부족한 도로폭원 확보 • 보행자전용도로에 준하는 시설의 설치
		공원 녹지형	• 가로공원 확보	• 간선가로변 및 대형개발지 주변 가로공원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이용형태에 따라 동적공간, 휴게공간, 녹지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
변경	전면 공지	보도 연결형	• 보도의 확장	• 보도 설치에 충분한 폭원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	• 기존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 공공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보행 장애시설 설치는 금지
		도로 연결형	• 도로의 확장	•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차도 확보가 필요한 지역 • 건축법 제46조상 도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지 내 건축물을 이격한 지역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구 분			지 정 목 적	적 용 대 상	조 성 방 식
		공원 녹지형	• 가로공원 확보	• 간선가로변 및 대형개발지 주변 가로공원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이용형태에 따라 동적공간, 휴게공간, 녹지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

나. 공개공지 조성기준 : 변경없음

2. 경관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 계획기준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비고
기정	공동주차 출입구	•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 남부순환로변, 바우미길변	-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 개별 필지로의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지정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의 안전, 쾌적성 확보	• 주거지내 차량통행의 금지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보행자의 휴게, 휴식, 산책공간 확보 - 보행녹도	-
	공동 보행통로	• 주요시설 및 대형건축물과의 보행연계 및 보행동선 단축	• 대규모 공동개발로 기존 관습로 폐지지역 • 최소폭 4m이상 확보 • 과다하게 긴(150m 이상)가구 및 보행통행이 빈번한 지점	-
변경	공동주차 출입구	•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 남부순환로변, 바우미길변, 강남대로변	-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 개별 필지로의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지정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의 안전, 쾌적성 확보	• 주거지내 차량통행의 금지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보행자의 휴게, 휴식, 산책공간 확보 - 보행녹도	-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비 고
	공 공 보행통로	주요시설 및 대형건축물과의 보행연계 및 보행동선 단축	- 대규모 공동개발로 기존 관습로 폐지지역 - 최소폭 4m이상 확보 - 과다하게 긴(150m 이상)가구 및 보행통행이 빈번한 지점	-

나.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지침 : 변경(계재생략)

다. 주차출입구에 관한 지침 : 변경(계재생략)

라. 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지침 : 변경없음

마.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지침 : 변경(계재생략)

바.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지침 : 변경없음

4. 특정지역에 대한 세부지침

가. 유통업무설비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최대개발가능밀도(허용용적률)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개발밀도는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결정 변경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 이하에서 조정 - 준주거지역(화훼공판장 및 aT센터) : 허용용적률 320%이하 - 일반상업지역(그 외 지역) : 허용용적률 400%이하 - 세부시설 결정시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침수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적용하지는 않음 - 도시계획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적용 - 건축물의 높이는 별도의 최고높이 제한 없이 건축법에 의한 전면도로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하며, 최종적인 높이 결정은 개발밀도와 같이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	-
변경	- 유통업무설비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특별계획구역 지침마련을 통해 관리 - 기존건축물(유통업무설비)증축 시 연면적 50% 이내에서 증가분의 50% 이상 R&D용도(허용용도 내 R&D용도) 조성 시 증축 인정 - 연구시설 변경 요청시 허용검토 R&D 육성 방향에 부합하는 공간 및 프로그램 도입조건 - 시설간 변경으로 기부채납 의무는 원칙적으로 배제	유통업무설비 중 농수산물도매시장/창고 (양재동 229 外 1)는 특별계획구역 미지정

나. 교육문화회관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계획내용
기정	개발방향	- 자연녹지지역에 준하는 제어기준 적용 - 기존시설의 유지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허용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은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용도	- 불허용도 F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적용) - 근린생활시설 중 차, 단란주점 타. 안마사술소 - 위락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권장용도 : 청소년관련시설
	개발밀도	- 기준/허용용적률 : 40%/50%이하 - 건폐율 : 20%이하 - 최고높이 제한 : 40m이하, 사선제한규정 동시규제 - 인센티브는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적용 - 상한용적률은 공공용지 부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를 적용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 위치는 공공의 이용에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율적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시 결정 - 최소확보면적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2조 적용 - 건축한계선 : 잔디로 확폭 - 잔디로변 일부 : 7m이상(세부 지침도 참조)
	기 타	불허용도 중 지정된 시설 중 기 승인된 기존시설에 한해서는 동일면적 미만에서 위치 및 내부시설 변경은 허용

구 분		계획내용
변경	개발방향	• 자연녹지지역에 준하는 제여기준 적용 • 기존시설의 유지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허용 • 양재지역 R&D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민간 사전협상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 허용검토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자연녹지지역
	건축물의 용도	• 불허용도 F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적용) - 근린생활시설 중 차. 단란주점 다. 안마시술소 - 위락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권장용도 : 청소년관련시설 • 사전협상 추진시 유통업무설비 허용용도를 고려한 별도 용도계획 수립
	개발밀도	• 기준/허용용적률 : 40%/50%이하 • 건폐율 : 20%이하 • 최고높이 제한 : 60m이하 • 인센티브는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적용 • 상한용적률은 공공용지 부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를 적용 • 사전협상 추진시 협상을 통한 별도 밀도계획 수립
	대지내공지	• 건축한계선 - 바우외로12길 7m(지침도 참조) - 매 한 로 7m(지침도 참조) ※ 도로확보 시 확보한 폭만큼 건축한계선 축소 가능
	기 타	•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의 활용은 기타 기반시설(도로 등) 및 R&D용도 건축물, 생활권서비스시설(생활권계획) 기부채납 고려

※ 주건물을 제외한 주변 청소년시설은 대체시설 확보(면적기준)시에 한해 호텔지원시설로 변경이 가능

5.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결정조서 : 신설

- 매현지구중심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에 대한 계획기준

구분			계획내용		
			준주거지역 조정가능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조정가능지	
위치			양재동 매현지구중심 내 강남대로변 제2종일반주거지역	양재동 매현지구중심 내 이면부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용도 지역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 기여	비율	20%이상	15%이상	10%이상	
	활용계획	· R&D시설(공유업무시설 등)로 우선 활용 · 도로, Open space, 주차장, 생활서비스시설 (생활권계획) 등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 ※ 지역기여시설(필요시설)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공공성 인정시 공공기여 비율에 5% 이내 반영			
건축물의 용도· 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불허용도B	불허용도C	불허용도B
		권장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조서 내 권장용도 적용 자율적 공동개발에 따른 권장용도 중첩시, 선택 적용 가능		
	건폐율		60%이하	50%이하	
	용적률	기준	180%이하	180%이하	
		허용	330%이하	230%이하	
		상한	400%이하	250%이하	
	최고높이		강남대로변 : 60m 이면부 : 40m	30m	40m
교통처리계획			강남대로변에서 차량출입 불허		
최소개발규모			1,500㎡	1,000㎡	

※ 향후 용도지역 변경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

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⑥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aT센터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32	-	증) 17,460.00	17,460.00	-
신설	②	화훼공판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32-4	-	증) 69,791.40	69,791.40	-
신설	③	현대기아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31	-	증) 22,937.98	22,937.98	-
신설	④	하나로마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30외 2	-	증) 64,438.40	64,438.40	-
신설	⑤	농협전산센터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14	-	증) 15,355.20	15,355.20	-
신설	⑥	하이브랜드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15	-	증) 28,972.30	28,972.30	-
신설	⑦	대신주유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16외1	-	증) 7,976.90	7,976.90	-
신설	⑧	쌍용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17-7외 2	-	증) 3,768.50	3,768.50	-
신설	⑨	코스트코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17-6	-	증) 9,598.50	9,598.50	-
신설	⑩	오토갤러리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17외 3	-	증) 12,858.90	12,858.90	-
신설	⑪	양재하림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5외 6	-	증) 86,002.50	86,002.50	-
신설	⑫	농협양곡유통센터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2외 1	-	증) 16,789.60	16,789.60	-
신설	⑬	양곡도매시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3외 1	-	증) 32,093.47	32,093.47	-
기정	⑭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4	9,782.6	-	9,782.6	-
신설	⑮	LG연구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우면동 16	-	증) 35,365.00	35,365.00	-
신설	⑯	KT연구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우면동 17외 1	-	증) 67,101.00	67,101.00	-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결정사유
특별계획구역 ①~⑬, ⑮, ⑯	주변의 고층건축물로 둘러싸인 노후·불량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블록단위 개발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감안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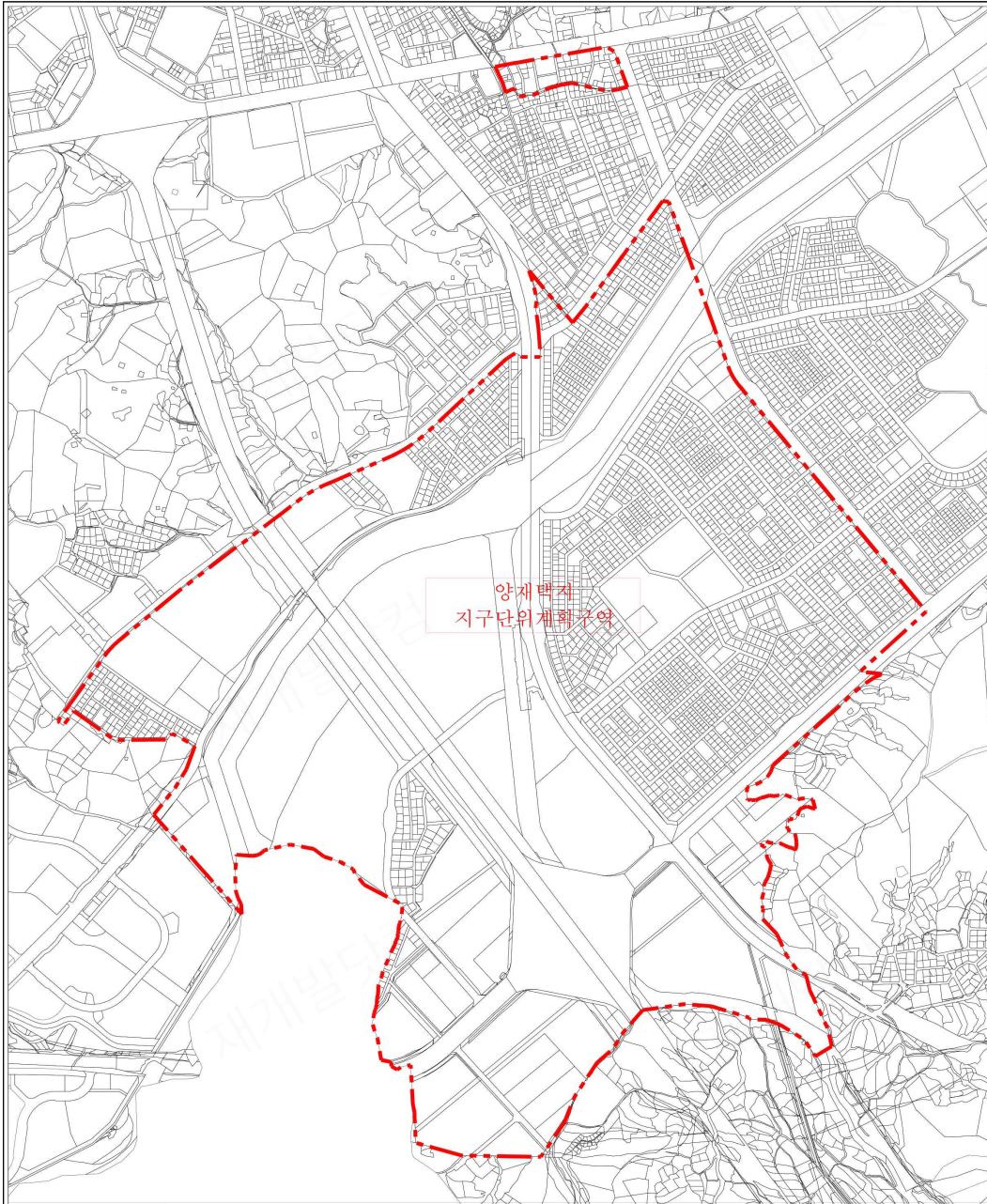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88)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 02-2155-679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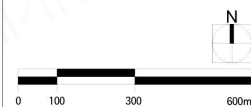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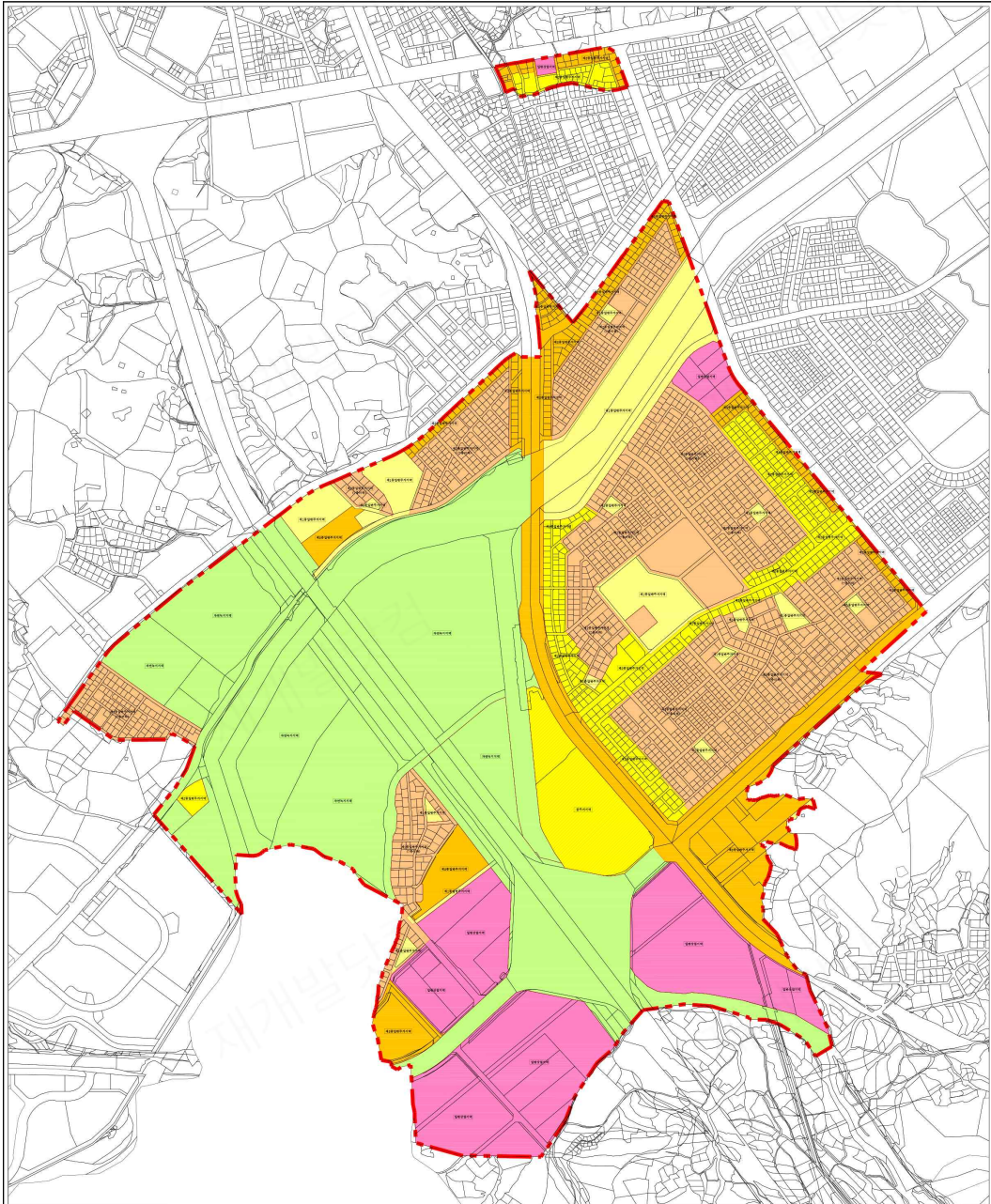
서초구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 선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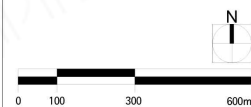
서초구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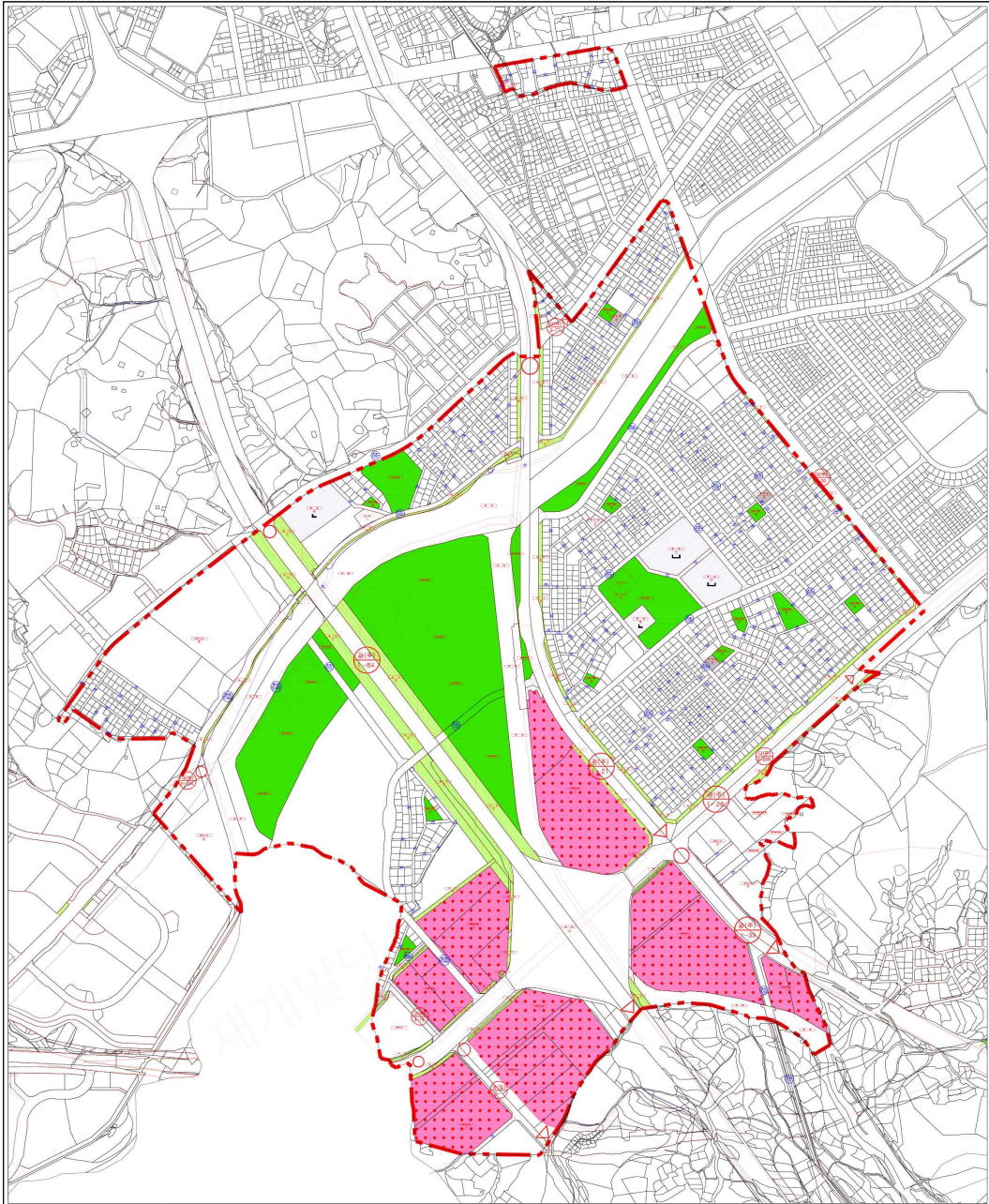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서초구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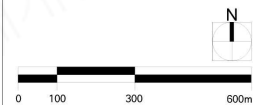
공원

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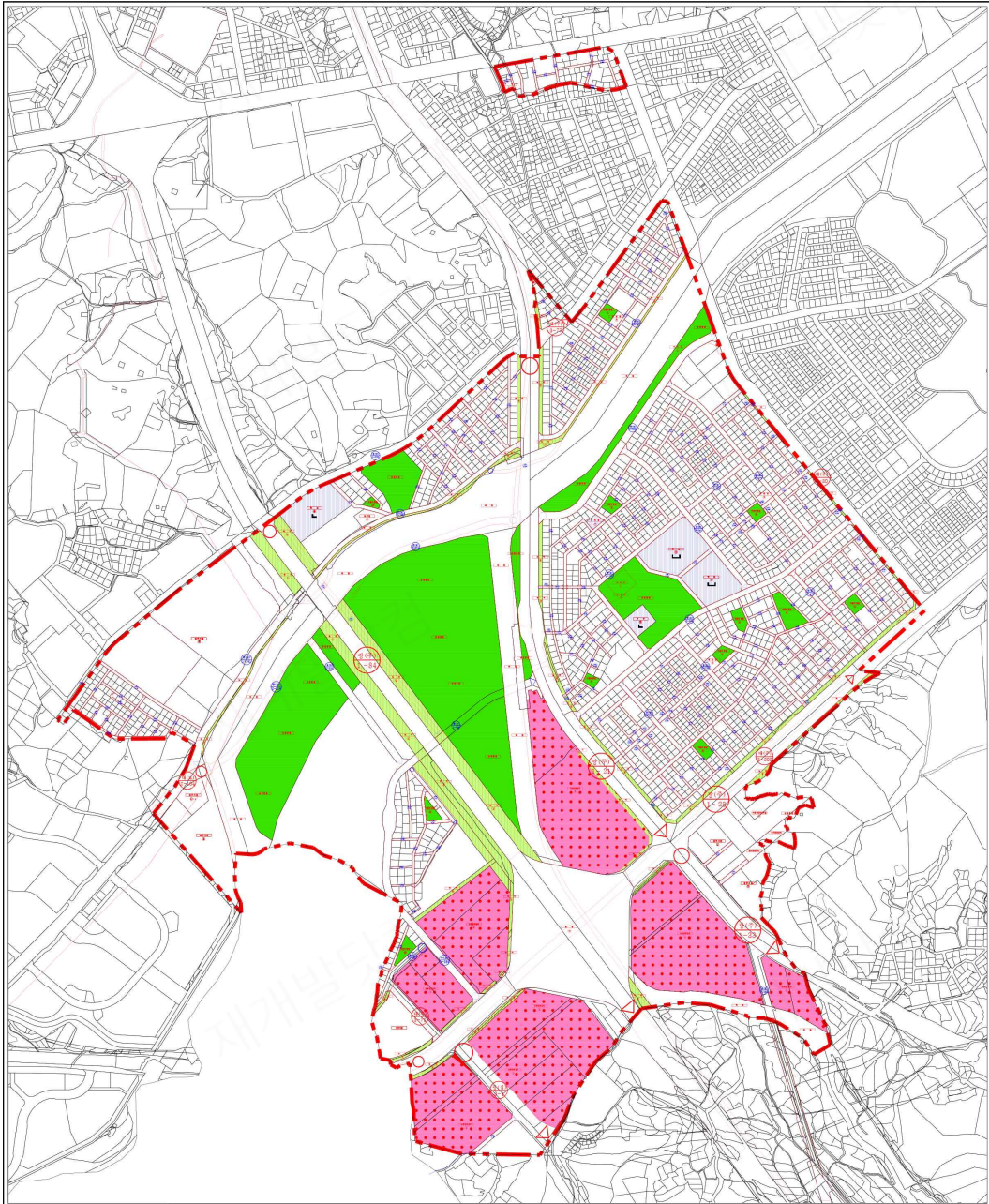
학교

유통업무설비

기타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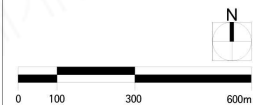
서초구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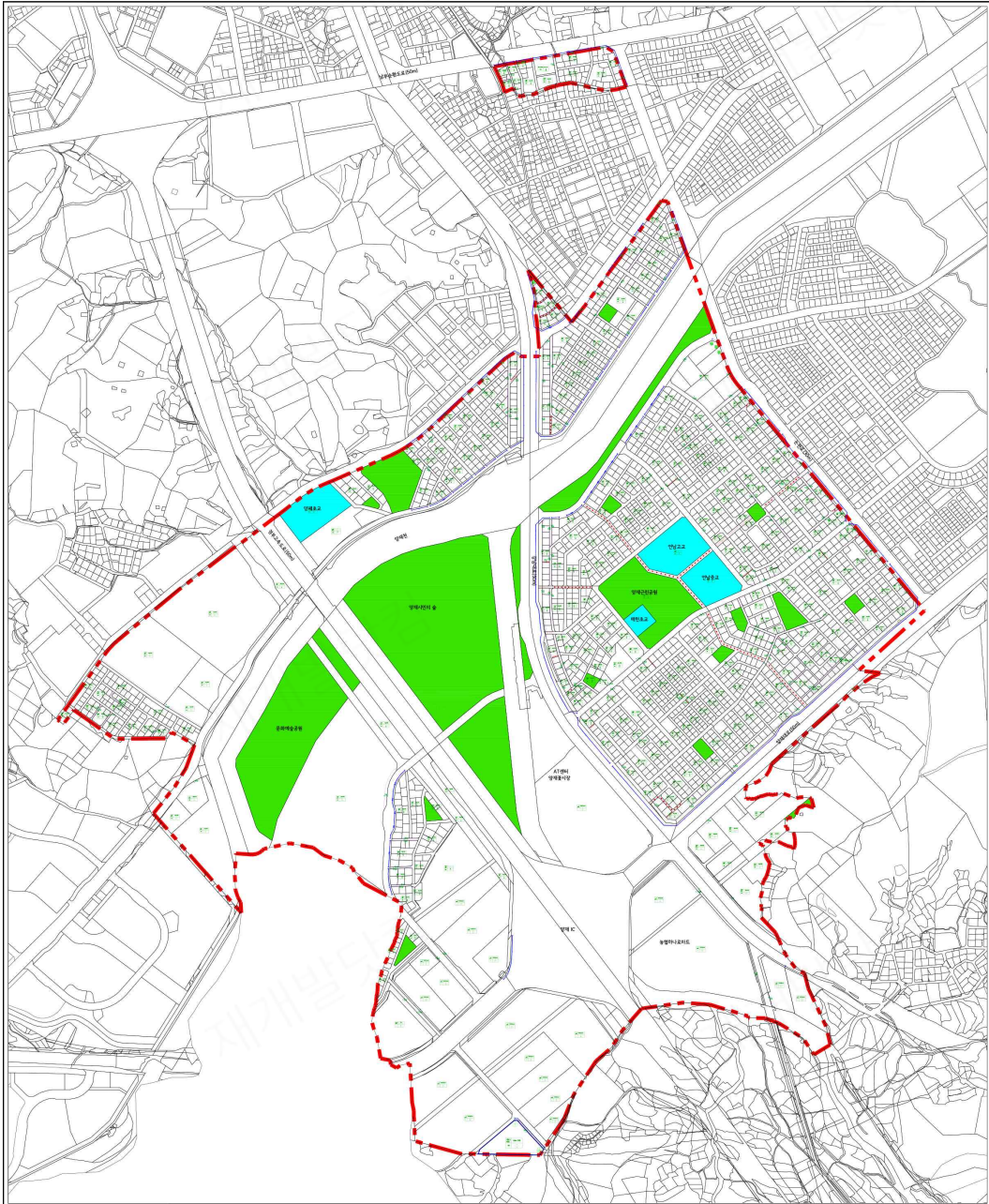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계획도로
- 도시계획도로
- 주차장
- 공 원
- 녹 지

- 학 교
- 유통업무설비
- 기타도시계획시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서초구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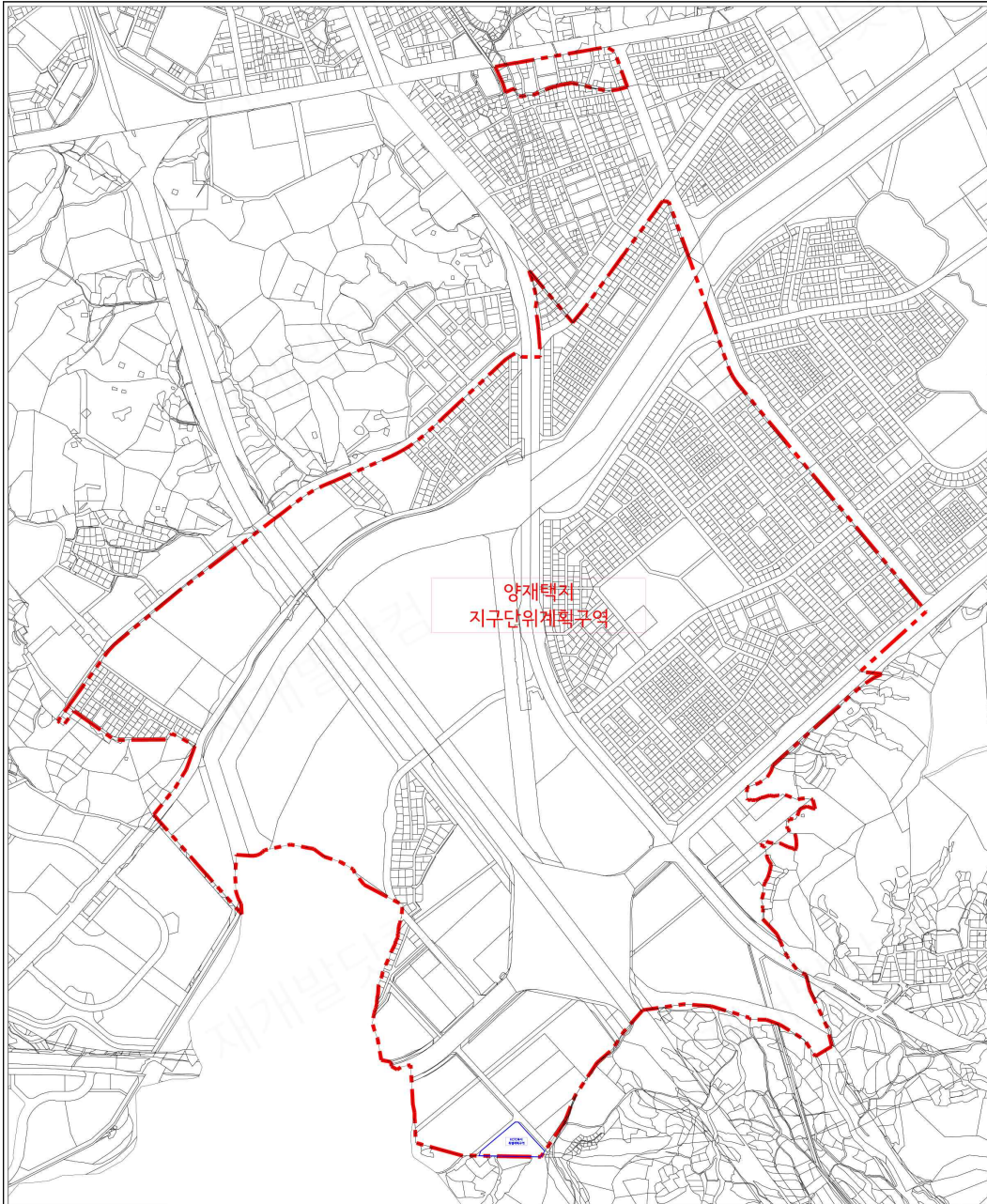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 지적선
- 건축한계선
- 학교
- 공원
- 공개용지
- 공동주택밀집구
- 주차출입구
- 차량출입금지구간
-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공공보행통로



용도에 관한 계획

분 류	용 의 용도	분 류	관 령 용도	분 류	지 정 용도
주거용	주거용지	상업용	상업용지	공공용	공공용지
상업용	상업용지	공업용	공업용지	문화·체육·관광용	문화·체육·관광용지
공업용	공업용지	문화·체육·관광용	문화·체육·관광용지	기타	기타
문화·체육·관광용	문화·체육·관광용지	기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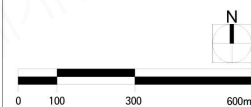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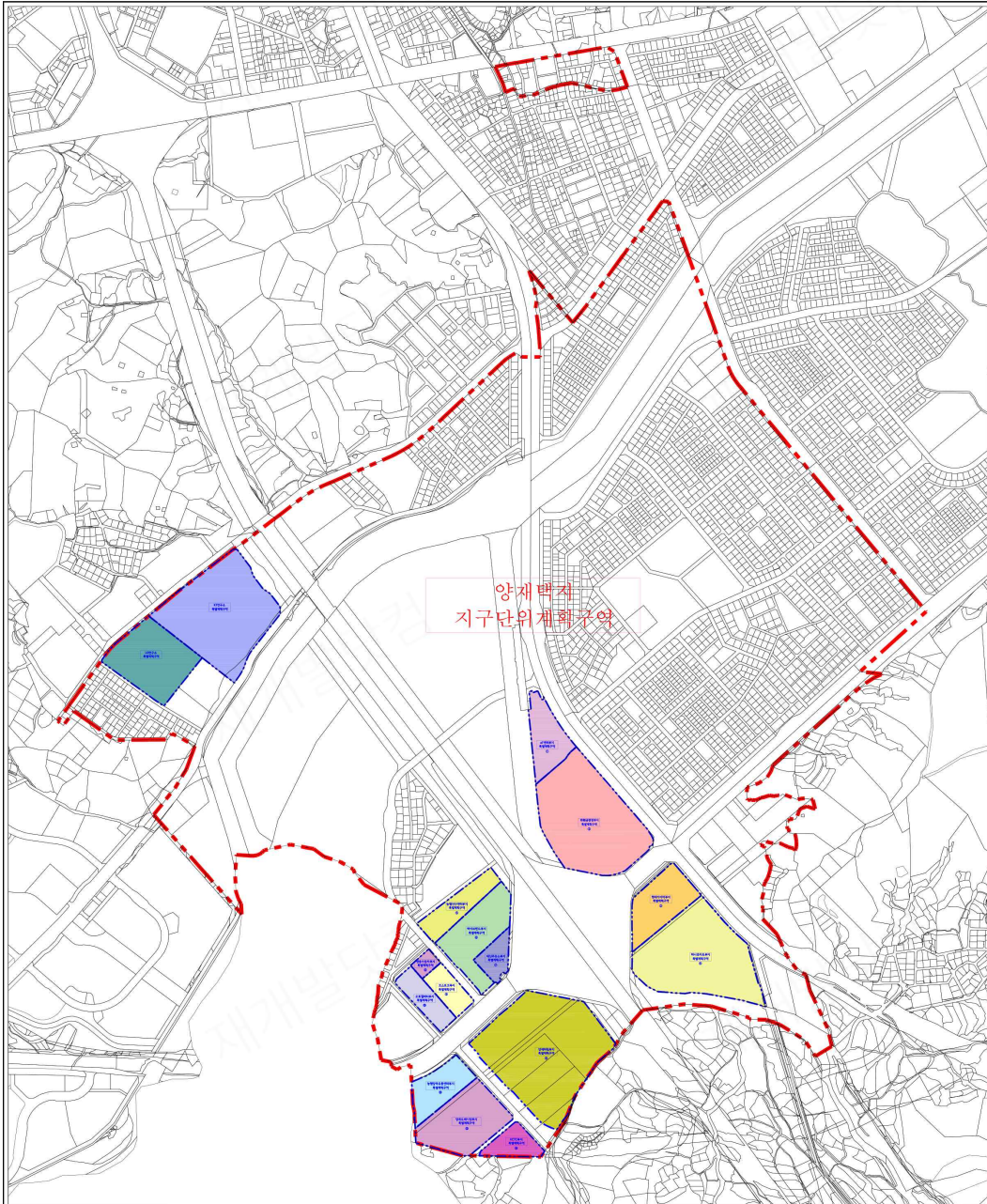
서초구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범 례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특별계획구역
 - - - 지 적 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서초구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 지 적 선

